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이주용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,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, 접수, 심사,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목적, 적용범위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제안제출, 접수 등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2조)
- 라. 제안의 심사기준, 의견조회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제15조)
- 마.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20조)
- 바.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 ~ 제28조)

3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,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, 접수, 심사,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.

○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규칙의 목적, 적용범위 및 정의

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안제출, 접수 등 관한 사항

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, 의견조회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

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

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 참고자료: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